

사례 중심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양성과정

2021. 5. 13.(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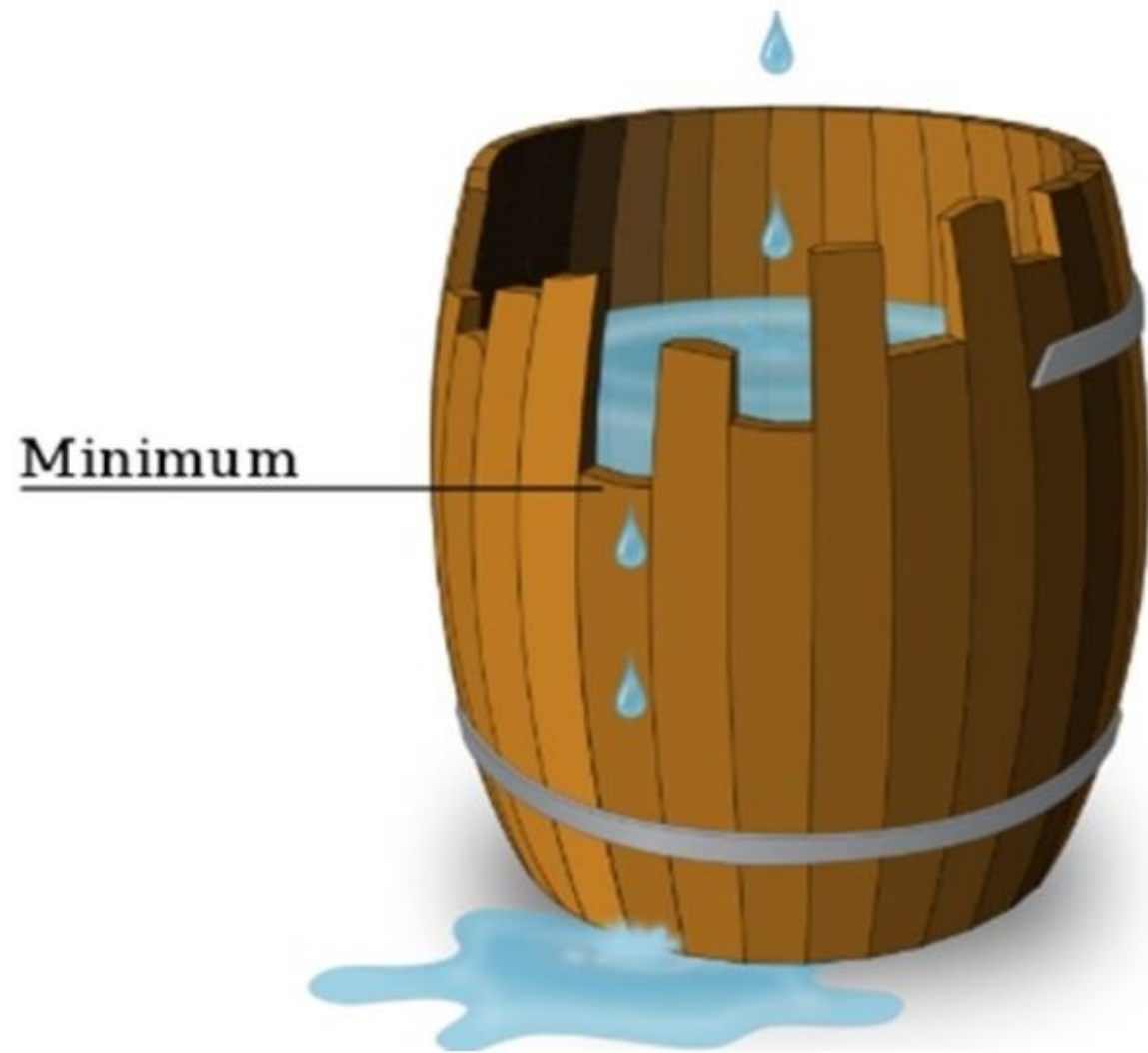
김 효 손 변호사

강사 소개 - 김 효 손

- ▶ 광주 진흥중, 서강고, 고려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대학원
-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44기)
- ▶ 現 한국은행 근무(준법관리, 청렴반부패, 공직윤리)
-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2017-)
-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강의 다수
- ▶ 공무원 나라배움터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반부패 청렴정책' 등 집필 및 감수



강의 목표 - 왜 청렴교육인가?



[사진= '위키피디아' 캡처]

청탁금지법

4개 중요조문

확실히 이해하기

강의 목표 - 2580



강의 목표 - 2580

청탁금지법 4개 조문 바로 알기(2 5 8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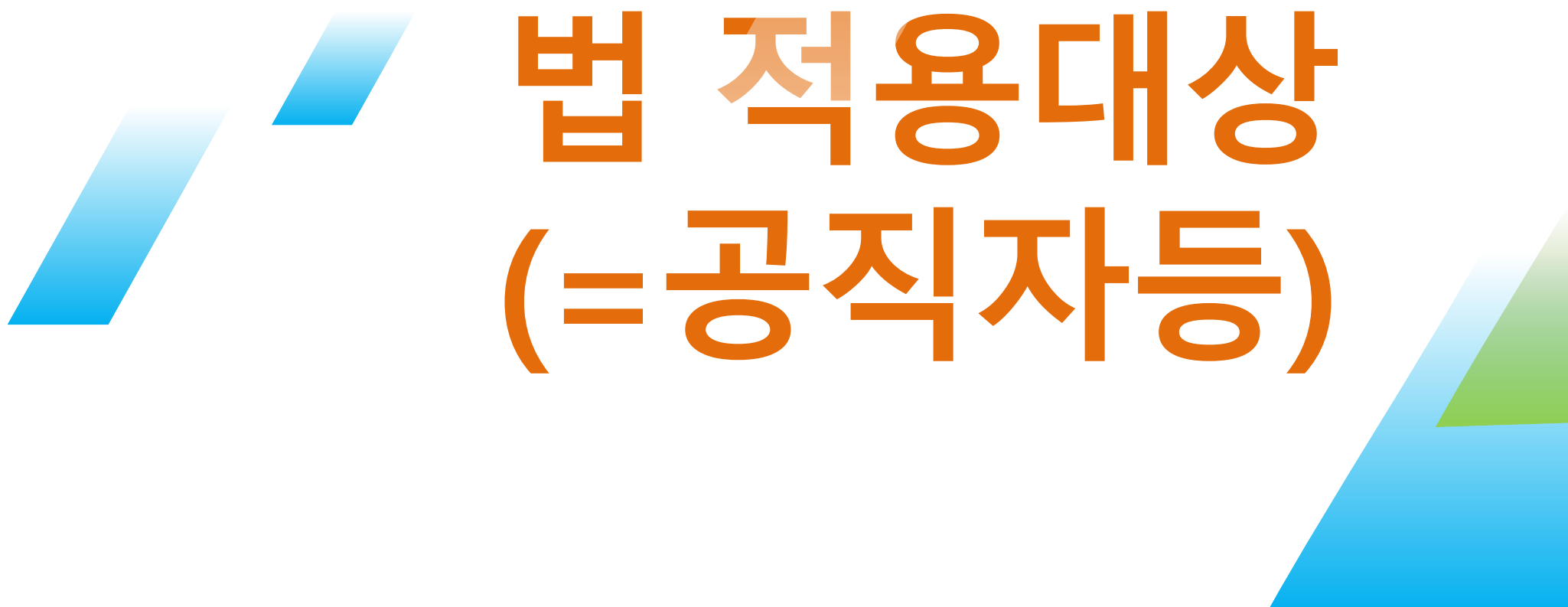
제2조(정의)

제5조(부정청탁 금지)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

제10조(외부강의등)

제2조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

제2조 법 적용대상 - 이론



제2조 법 적용대상 - 이론

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배우자

각급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제2조 법 적용대상 - 이론

공직자등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O)
기간제 근로자(X)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기간제 직원, 아르바이트(O)
용역업체 직원(X)

제2조 법 적용대상 - 이론

공직유관단체 vs.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vs. 공공기관운영법(기획재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

한국은행, 서울대학교, KBS?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X

제2조 법 적용대상 - 이론

공직자등

각급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기간제교원, 병원겸직교수, 강사(19.8.1), 인턴기자(O)
방과후교사, 겸임, 명예교수, 외주업체(X)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다름!
(시간당 100만원, 150%상한X)

제2조 법 적용대상 - 이론

공직자등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만 적용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에 관하여 제5조+제8조만 적용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법 적용대상자(공직자등)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일반인에게 경조사비 10만원을 줄 수 있나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



읍장, 면장, 동장이 5만원 상품권을 받아도 되나요?



법 적용대상이므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



정부부처나 지자체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5만원 상품권을 받아도 되나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한국은행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5만원 상품권을 받아도 되나요?



법 적용대상이므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공무수행사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50만원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법인,단체(어린이집)에 위탁한 것->대표자만 O)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공무수행사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 시청 민간위탁 노인복지관 직원이 150만원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 것->대표자만 O)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공무수행사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중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



주민자치위원이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5만원 상품권을 받아도 되나요?



자치위원은 공무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제5조+제8조 적용)

제2조 법 적용대상 - 사례

공무수행사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중 공직자가 아닌 민간위원



시청자위원회,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로부터 5만원 상품권을 받아도 되나요?



공무수행사인은 수행하는 직무(공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법령’인 방송법 또는 신문법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

제2조 법 적용대상 - 이론



제5조

The background features several large, abstract geometric shapes. On the left, there are two overlapping blue parallelograms. On the right, there is a large blue triangle pointing upwards, with a smaller green triangle nested inside its upper right corner.

부정청탁 금지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이론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이론

형법상 부정한 청탁과는 다릅니다

(제3자 뇌물제공죄)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나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판 2001도970).

(배임수·증재죄)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판 2012도535).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이론

형법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이론

부정청탁의 기본구조

제5조제1항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이론

부정청탁 위반 시 제재사항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 벌금 및 과태료 X(공직자등 징계 O)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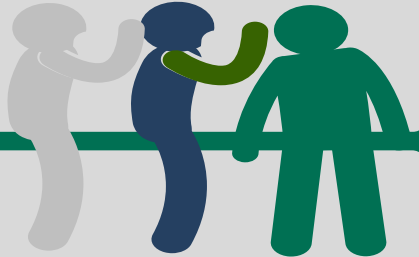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이론

부정청탁 대상직무(14가지) + 법령위반

1	인허가 등 처리	2	공공기관 주권 계약 체결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4	공공기관 계약 체결
5	공공기관 주관 공모	6	공공기관 계약 체결
7	공공기관 주관 계약 체결	8	공공기관 계약 체결
9	공공기관 주관 계약 체결	10	입학, 성적 등 업무 처리, 조작
11	공공기관 주관 계약 체결	12	공공기관 실시하는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3	공공기관 주관 계약 체결	14	수사, 재판, 심판 등 업무 처리

제5조제1항제15호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이론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가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방법·절차에 따른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무원의 공익 목적 고충민원 전달

4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7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민원제기, 국민신문고? 제1호
SNS게시, 1인시위, 공문으로 요구? 제2호
환자 증증도에 따라 외래순서 앞당겨? 제7호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입찰제한 받은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해 달라?



대상 직무(계약) 및 법령 위반(국가(지방)계약법)이므로 부정청탁임

(담당 공직자는 G2B를 통해 부정당업자인지 확인의무 있어)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장애인기업 운영자 A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B에게 우선구매를 요청?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부정청탁이 아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있음)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환자 본인을 위한 직접 부정청탁(외래,수술,입원 접수순서 변경)?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중 “나의 차량만 면제해 달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으로, 형태 불문하고 법 위반
(처벌규정은 없지만, 공직자등이라면 성실 의무(법규 준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 가능)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신청 및 추천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수련원 객실 이용을 임의로 부탁?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으로, 형태 불문하고 법 위반

(5일간 이용에 대해 50만원 과태료 부과한 청주지법 2019과1041)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성실 의무 위반 (법규 준수 의무 위반)	심+고의	심+중과실	심+과실	과실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징계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성실의무위반(기타) -> 별도 비위로 명시 + 양정 강화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A가 채용(승진) 앞두고 인사담당 B에게 상담 창구를 통한 자기신고나 인사 의견 개진?



내규(기준)에서 정한 자기신고나 인사 의견 제출은 부정청탁이 아님
(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예외사유는 법령 외에도 기준, 내규, 사규 등을 포함)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Q

A가 채용(승진) 앞두고 인사담당 B에게 “A 본인에게 유리한 선정기준을 채택해 달라”

A

통상의 인사절차를 넘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청탁입니다.

(본인을 위한 부정청탁 O. 청탁금지법 제4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정 의무를 규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공직자에게 + 법령 위반 청탁 -> 청탁금지법 + 행동강령

공직자에게 + 위규,부당 청탁 -> 행동강령

민간인에게 + 법령 위반 or 위규,부당 청탁 -> 행동강령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조카를 위해 민간업체에 “인사 면접 잘 좀 봐달라”, “성희룡에 감봉은 심하지 않나?”)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행동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임,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유의)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비교)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18. 1. 16. 개정, 2018. 4. 17. 시행>

1

특정인에게 투자,대여,출연 등 개입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나 징계 업무

3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4

계약당사자 선정, 탈락에 개입

5

특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

6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7

수상, 포상, 선정, 탈락에 개입

8

감사,조사 결과 조작,묵인

9

그 밖에 기관장이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14 vs. 8+1

1	인허가 등 처리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4	공공기관 의사결정 위원직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포상, 선정, 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당사자 선정, 탈락에 개입	8	보조금,기금 등 배정,지원,투자,대여,출연 등 개입
9	공공기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판정 등 병역 관련 업무	12	공공기관 실시하는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3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14	수사,재판,심판 등 업무 처리

채용절차법 주요 개정사항 - 참고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채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제4조의2)



일반인이 채용 관련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개정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공직자등이라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이 함께 문제됨)

채용절차법 주요 개정사항 - 참고

부당한 청탁



채용 압력과 강요

내가
사장이

채용절차법 개정 주요 내용

7월17일부터 시행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 요구

위반

과태료 부과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채용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 수수·제공

1회

1,500만원

2회 이상

3,0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도 안됩니다!

임사지원을 할 때 또는 면접에서
구직자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하는데
필요한
정보인가요?

커 보이는데
키가 얼마죠?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나요?



행동강령 주요 사항 - 참고

그 밖의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사항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행동강령 주요 사항 -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구분	합계	금품, 향응 등 수수	예산의 목 적 외 사용	알선·청탁, 이권개입	공용물 사 적사용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위 반	금전 차용 금지·직무 관련자 거 래 신고	공정한 직 무수행 저 해	경조사 통 지, 경조금 품	기타
계	20,798	8,319	7,037	837	911	1,529	193	201	138	1,633
2003.05~	367	259	32	21	29	5	0	0	7	14
2004	842	624	75	53	45	4	1	1	11	28
2005	937	737	84	31	28	9	3	3	15	27
2006	678	428	133	20	21	6	15	4	7	44
2007	679	392	121	37	16	36	7	39	6	25
2008	764	283	346	17	21	72	6	3	5	11
2009	1,089	381	464	70	60	65	30	8	2	9
2010	1,436	760	424	63	49	50	21	9	9	51
2011	1,506	651	552	80	79	52	15	17	4	56
2012	1,837	701	907	49	55	31	18	8	18	50
2013	2,103	725	977	72	65	144	18	16	8	78
2014	1,965	655	683	69	76	209	15	15	11	232
2015	1,742	498	543	64	47	188	17	37	11	337
2016	1,423	383	370	54	75	260	11	18	15	237
2017	1,430	344	603	36	97	155	9	10	4	172
2018	1,410	278	610	41	120	242	4	8	5	102
2019	590	220	113	60	28	1	3	5	0	160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

목적 **外** 사용(예산 기준 · 지침으로 판단) + 기관에 재산상 손해



업무추진비나 회의행사비를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
기관장 친목모임 회비(현금)를 예산으로 지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업무추진비나 회의행사비 등 예산의 목적(기준, 지침)에 맞게 지출해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

목적 **外** 사용(예산 기준 · 지침으로 판단) + 기관에 재산상 손해



업무추진비나 회의행사비 지출시 참석인원을 부풀려 고가의 식대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업무추진비나 회의행사비 등 예산의 목적(기준, 지침)에 맞게 지출해야, 감사원 지적사항)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

목적 **외** 사용(예산 기준 · 지침으로 판단) + 기관에 **재산상 손해**



구매물품 수량을 부풀려 과다 계상하여 판매업체에 예산을 과다 지급?
구매물품 수량을 미계상하여 기준요금을 초과하게 되어 판매업체에 예산을 과다 지급?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업무추진비나 회의행사비 등 예산의 목적(기준, 지침)에 맞게 지출해야, 감사원 지적사항)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

목적 **外** 사용(예산 기준 · 지침으로 판단) + 기관에 재산상 손해



물품의 실제 구매 없이 허위로 견적서, 지출결의서 작성, 발급하여 현금 일부 되돌려 받아?



금 횡령 및 유용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나아가 (업무상) 횡령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형법 제355조, 제356조),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

목적 **外** 사용(예산 기준 · 지침으로 판단) + 기관에 재산상 손해



외부강의시 소속기관과 출강기관에서 출장비를 중복 수령?
관용차량 출장임에도 개인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수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출강기관에서 출장비(여비)를 별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

목적 **外** 사용(예산 기준 · 지침으로 판단) + 기관에 재산상 손해



공휴일, 심야시간, 자택근처 등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는데 법인카드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행동강령 위반이 원칙
(출장명령서 등으로 직무관련성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례

목적 **外** 사용(예산 기준 · 지침으로 판단) + 기관에 재산상 손해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거래제한업종에 법인카드?
귀금속, 고가 주류, 골프용품, 건강보조식품 등 업무와 무관한 특정물품에 법인카드?



제한업종 및 제한물품 구매는 예외 없이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사례

직무 범위 外 + 사적 이익 도모 + 기관 명칭, 임직원 직위를 공표 · 게시



사적 친분이 있는 자의 개업식에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환을 송부?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사례

직무 범위 外 + 사적 이익 도모 + 기관 명칭, 임직원 직위를 공표 · 게시



사적 친분이 있는 자의 동창회 · 결혼식에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환 송부?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닙니다

(경조사에 화환 송부하는 것은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사례

직무 범위 外 + 사적 이익 도모 + 기관 명칭, 임직원 직위를 공표 · 게시



사적 친분이 있는 자의 출판물에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해 홍보, 추천, 인사말 기재?



직위의 사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사례

직무 범위 外 + 사적 이익 도모 + 기관 명칭, 임직원 직위를 공표·게시



기관장(부서장)이 기관(부서)을 대표하여 기관 명칭과 직위가 명기된 화환 송부?



직무 범위에 포함되고, 사적 이익 도모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 아님
(직무 범위에 해당할 수 있고, 부서를 대표한 것이어서 사적 이익 도모도 아닙니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사례

직무 범위 外 + 사적 이익 도모 + 기관 명칭, 임직원 직위를 공표·게시



경조사 축의금·부의금 봉투에 기관명과 직위를 적어서 제공?



사적 이익 도모 X, 공표, 게시 등 X -> 행동강령 위반이 아닙니다

(경조사는 사적 이익 도모 X, 봉투에 축의금, 부의금 제공은 공표, 게시 등 X)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 사례

공용물(차량,물품,설비,메일 등 업무용) +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포인트,사은품)



사적 용무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
업무상 구매한 홍보용품 여분을 개인이 수령?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에 해당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 사례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 사례

공용물(차량,물품,설비,메일 등 **업무용**) + 부가서비스(항공마일리지,포인트,사은품)



업무용 전화,팩스,프린터,메일을 사적으로 과다하게 이용?
법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적립포인트를 개인이 적립?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에 해당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전화,팩스,프린터,메일등 1회성 사용은 제재 실익이 적지만, 과다한 상습 사용은 위반)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A의 B를 통한 부정청탁이 담당 공직자 C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B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거절 (**+신고**) -> (일대전공분+소감수위)

Q

A의 B를 통한 부정청탁이 C에게 전달되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

A

B는 법 위반입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실현 여부는 불문. 한편 C는 거절(+신고) 의무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사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거절 **(+신고)** -> (일대전공분+소감감수위)



A의 B를 통한 부정청탁이 C에게 전달되었고 실행까지 한 경우?



B와 C는 법 위반입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살펴야(실현 여부 불문). 한편 C는 거절(+신고) 의무에 직무수행 금지 의무 위반)

행동강령 최근 개정사항 - 참고

행동강령 최근 개정사항(甲질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이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12. 24. 개정 및 시행>

- 1 직무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
- 2 인허가 신청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
- 3 계약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
- 4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자신의 업무를 전가하거나 예산, 인력 등의 부담을 전가
- 5 그 밖에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참고



이 가이드라인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7.5.)를 통해 발표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갑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장에 적용할 경우 관련업무, 상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참고

공공부문 갑질피해 신고·민원 청구 통합 안내

01 | 갑질피해 상담신청

- 갑질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바로가기 >

02 | 갑질피해 민원신청

-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민원을 신청



바로가기 >

상담 민원

신고

-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 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것을 신고



바로가기 >

03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신고



바로가기 >

04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기관 등 공공부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바로가기 >

05 | 성희롱·성폭력 신고

- 폭언, 폭행 등 그 밖의 갑질피해 신고



바로가기 >

06 | 기타 갑질신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참고

성실 의무 위반 (현재는 기타)	심+고의	심+중과실 약+고의	심+경과실 약+중과실	약+경과실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위 갑질행위, 성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사례

- ①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②신청접수 지연,거부
③계약 관련 의무,부담 전가 ④소속,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인력,예산 전가
부당한 권리 제한 or 의무 없는 일을 요구



상급자가 자신의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위해 하급자에게 자료수집 요구?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행동강령(갑질 금지) 위반입니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사례

- ①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②신청접수 지연,거부
③계약 관련 의무,부담 전가 ④소속,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인력,예산 전가
부당한 권리 제한 or 의무 없는 일을 요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야근 및 휴일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행동강령(갑질 금지) 위반입니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사례

- ①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②신청접수 지연,거부
③계약 관련 의무,부담 전가 ④소속,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인력,예산 전가
부당한 권리 제한 or 의무 없는 일을 요구



계약 체결을 앞두고 몇 천 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 요구?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행동강령(갑질 금지) 위반입니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 사례

- ①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②신청접수 지연,거부
③계약 관련 의무,부담 전가 ④소속,산하기관에 부당한 업무,인력,예산 전가
부당한 권리 제한 or 의무 없는 일을 요구



하급자, 전산수리 파견(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반말, 협박, 폭언 등?



행동강령(갑질 금지) 및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 7. 16. 시행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근로기준법' 추가)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 참고

- ①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
-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1. 15. 개정, 2019. 7. 16. 시행>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동강령 최근 개정사항 - 참고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출장경비 등 지원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2(감사,감독기관에 대한 출장경비 등 지원 금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은 피감독기관에 다음 각 호의 요구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개정 및 시행>

- 1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예산 지원이나 편의 제공
- 2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의 제공

제5조 부정청탁 금지 - 이론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이론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이론

금품등 수수 기본 구조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이론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 8가지

1

소속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
상급자가 위로 · 격려 · 포상 목적 제공

2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목적 **3, 5, 5**

3

권원의 정당성 + 대가의 적정성

4

8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이 제공

5

친목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
장기적 · 지속적 친분관계+**질병,재난**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통일적+**교통,숙박,음식물 등**

7

불특정 다수인 기념품 · 홍보용품(**제작** 목적)
경연 · 추첨을 통한 보상 · 상품

8

법령 · 기준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명절 앞두고 20만원 온누리상품권 제공?



제1호 전단에 따라 허용됩니다.
(제1호는 제2호와 달리 금품등 종류와 가액을 불문)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A부서 팀장이 B부서 팀원에게 격려차 5만원 기프티콘 제공?



제1호 후단에 따라 허용됩니다.

'보다 높은 등급(계급)으로 직무상 상하관계'면 OK,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로 한정 X (대판 2018도7041))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관리자 평가기간 중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5만원 문화상품권 제공?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호는 금품등 종류와 가액을 불문하나, 후단은 전단과 달리 목적요건 0 유의)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정기적인 업무협의 후 3만원의 식사 접대?



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목적 요건 충족함. 다만, '함께 하는' 식사가 아니라면 위반)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직무 관련 공직자와 비공개 업무협의 후 3만원 점심+5천원 커피 접대?



제2호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입니다.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인정되어 '1회'로 평가)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직무 관련 공직자와 종일 비공개 업무협의차 2만원 점심+3만원 저녁 접대?



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식사시간에 맞추어 제공하면 1끼니당 기준이고, 시간적 근접성도 없어 '1회' 아님)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승진 축하로 10만원 이내의 난화분 제공?



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농수산물 및 원재료 비중이 50% 초과하는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0만원 이내 가능)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하다는 "스티커"를 확인하시고,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을 구입하세요.

- 유통업체, 식품·음료 등 제조업체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선물세트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티커”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선물 구매 시 스티커를 확인해주세요!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인사기간 중 인사담당자에게 10만원 난 화분 선물? 10만원 조화?
(심사,조사,검사,평가,수사,재판 등)



선물은 가액범위 이내도 위반이지만, 경조사비는 가능합니다
(목적 요건 충족하지 못함. 직접적 직무관련성(?))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퇴직 예정인 부서장에게 직원 20명이 5만원씩 각출해 100만원 순금패 제공?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입니다.

(합의 각출은 20명 각자 100만원씩 제공한 것, 순금패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감사패 아님)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760만원
골프채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혐의는 인정

권익위, 신고자에게 1500만원 포상금 지급

△ 정년 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카네기 재단 퇴임 기념 선물로

△ 선물 가치

공원에서 재직하던

수수

후배교수 17명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

공모한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할

~~~~~

부분이 있다"

그림_정찬동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 공로연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직무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

○ 공개적으로 전달 + 퇴직예정자는 누가 얼마씩 각출해...

○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

" 그 밖에 이...

퇴직기념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과태료재판(비송), 불처벌결정
위반통보처분재판(행정소송), 취소판결

100만원
황금열쇠



100만원 이내면
퇴직자 선물은
언제나 허용되는가?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 직무관련 여부

- 태백시 2016년 하반기 평정계획에 따라 2016. 12. 15.-30. 평정대상자들이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입력하고, 위 기간 중 피신고자는 각출에 참여한 20명 등 21명의 일반직에 대한 평정권을 행사

□ 사회상규 해당 여부

- 민원봉사과에 재직중 일반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각출하여 퇴직 기념선물을 제공해온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 하급자들이 상급자에게 제공한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9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부서간 전보되므로 하급 직원이 장래에 동일한 퇴직선물을 받을 수 없고, 하급 직원들은 조직분위기 상 자유의사에 관계없이 각출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상 모금의 반강제성(실제로 직원 중 일부는 법 위반의사를 표시) 등을 고려할 때,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도 보기 곤란

<참고 판례(2018과1415, 10198)>

인정 사실

공직유관단체 직원인 위반자 A는 2016. 12. 30. B와 함께 상급자에게 퇴직 선물로 11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A50만원, B 60만원)를 선물하고, 2회에 걸쳐 하급자로부터 32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판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170만원, 190만원 부과
(2018년 7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하였으나 10월경 기각)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참고

형사법 vs. 반부패법



대한민국 법원
COURT OF KOREA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각출=가담?

직접적
직무관련성?

상급자

퇴직자
선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우리 「형법」은 범죄에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 가담형태에 따라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또는 방조범(제32조)으로 구분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와 달리 단일정범 개념을 도입하여 「형법」과 같은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자 모두를 정범으로 본다(제12조제1항). 따라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자가 여러 명이고 각자 가담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과태료는 동일하게 부과된다.^{34]}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직무관련자 3명 식사비 1인당 5만원을 A, B, C가 **순번제**로 15만원씩 제공?



금지.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시간적,근접성이 없는 경우까지 공제,상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함)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으로부터 2만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받는 경우?



(완곡한?) 거절+반환, 어렵다면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면 됩니다
(열실, 부패, 변질 우려 등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가능)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 책상에 금품등을 두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한 경우?



수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인도
(멸실, 부패, 변질 우려 등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 가능)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비상상고 해 달라"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제공 = 수수할 수 있는 상태면 OK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3호)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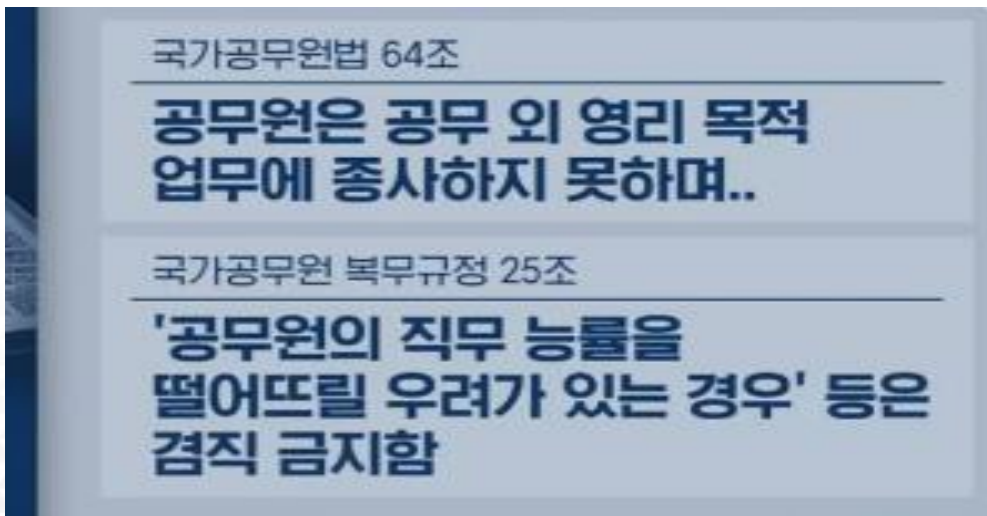
A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자문대가로 100만원 수수?



개별 자문은 외부강의등이 아닌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다만, 업무 성격, 계약기간 및 지속성 등 고려해 행동강령상 영리행위와 복무규정상 겸직 체크)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참고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 국민신문고 www.ekp.go.kr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보도자료 2019. 7. 11.(목)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담당관실	
		과 장 강선아	☎
작성		044-200-7161	
		사무관 정은수	☎
		044-200-7164	

“지방의원 검직정보 공개하고 처벌기준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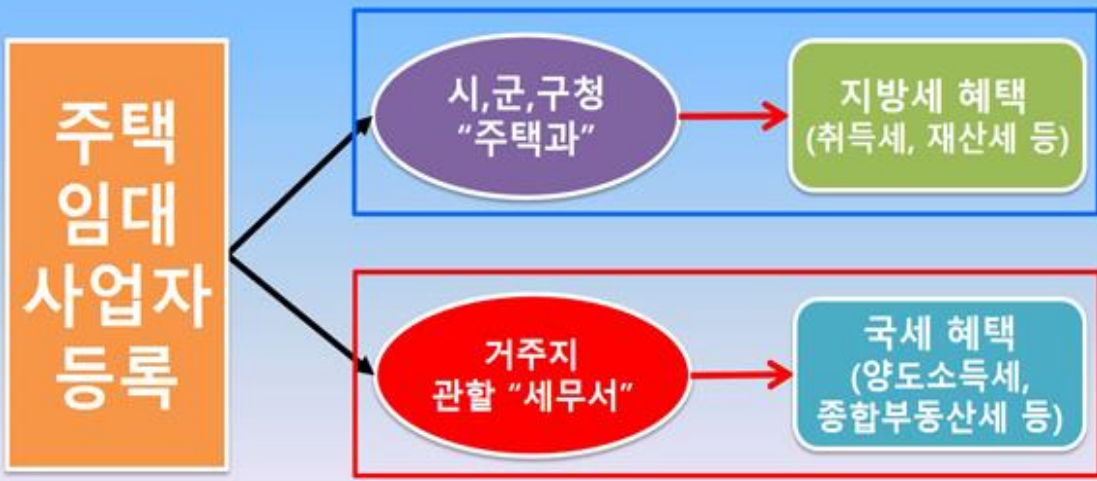
-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열려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개최하고 지방의회의원 검직정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검직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이해충돌방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 지방의회의원의 검직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 검직사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한 징계 의무화 및 검직 규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검직 관련 감시·자문 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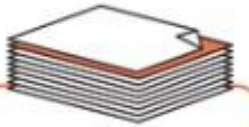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왜 구청,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혜택을 주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_ 인사혁신처(2017년4월)

news 1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참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외부 요청 없기 때문)

근무시간 外 사적인 취미활동, 자기계발	원칙적 허용 (직무수행 지장 있으면 금지)
광고수익 발생 요건 충족 (구독자1천명+연간4천시간 이상재생)	제한적 허용 (=검직 허가+사후 감독)
“광고수익 요건 불문하고” ○ 품위손상행위, ○ 협찬, 홍보, 라이브방송 통한 금전이득 등 영리행위 ○ 근무시간 中	절대적 금지 (복무규정 등 위반)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5호) 직원상조회, 친목회 등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의 자가 질병,재난 등에 처한 공직자등에게 제공



유관기관장 친목회(회비 예산처리)의 전근 앞둔 회원에게 회칙상 전별금 100만원?



법 위반입니다. 제5호의 친목단체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단체의 목적 및 계속성, 대표자 및 의결기관, 회칙, 각 회원의 개인부담 회비)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6호)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홍보용품



공공기관에서 창립기념행사로 골프 프로암 대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장을 참석자로 초청해 기관 로고가 있는 10만원 골프백 일률적 제공?



법 위반입니다. 제6호 및 제7호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골프대회는 직무 관련 행사 아니고, 선물은 제6호 금품 아님. 대상자 선정 무작위성 등 결해 제7호 아님)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사례

(제8호) 법령, 기준,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고가 아닌 감사패, 부상품, 샘플(건본품), 국감위원, 출입기자에게 사무실, 물, 음료, 1회주차권 제공, 프레스티켓, 인솔교사, 졸업식 꽃, 카드, 편지, 경조사 답례, 공공기관 간행물, 일반인과 同 혜택



제8호에 따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금품등 수량, 내용 및 가액과 수수 경위 등을 고려)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 이론



제10조

외부강의등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이론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이론

외부강의등 판단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 불문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이론

외부강의등 신고

외부강의등을 할 때 **10일 이내 사후 신고**해야 함(내부통신망)

- **사례금 있는 경우만 신고!** cf. 사례금 있는 경우 월3회 제한(행동강령)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고 면제(**국공립학교 등 소속기관 포함**, 사례금 상한준수)
- 보완 신고는 안 날 5일 이내 가능
- 기고(寄稿)는?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명목 불문.



모교에서 은사님 부탁을 받고 후배들을 위해 취업특강?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직무관련성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명목 불문.



방송 출연 특강이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방송 및 온라인은 전달 매체 수단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명목 불문.



소속기관장의 사전 검직 허가(승인)를 받고 학교 출강?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 허가(승인)에 따른 고유 직무 수행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명목 불문.



출제, 검토, 감수, 통역, 번역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 강의로 연계될 수 있다면 별도 검토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명목 불문.



기관장 등의 환영사, 축사, 주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 실질적 의견 · 지식 전달 X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명목 불문.



잡지나 저널 등 게재 요청에 따른 논문 기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의견지식 + 실질적 요청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지위·직책 등 사실상 영향력으로 요청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명목 불문.



잡지나 저널 등 요청없이 공모, 심사에 따라 실시하는 논문 게재?



외부강의등이 아닙니다. 실질적 요청 없는 자발적 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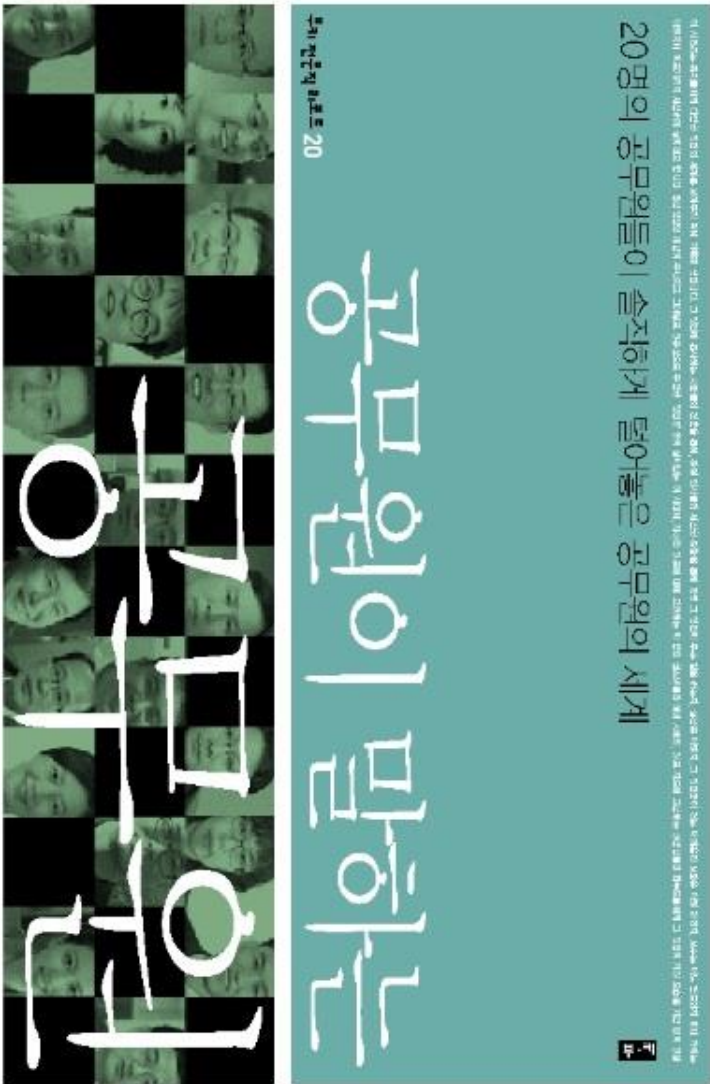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1회적	조치 불필요
주기적 업데이트 기간을 정해 집필	비영리 검직 허가
주기적 집필 직접 출판, 판매	영리행위 금지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이론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세전 금액)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직급 불문)	언론사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국공립+공직유관단체 소속 포함)
1시간 사례금 상한액 (기고는 1건당)	40만원	100만원
1시간 초과 시	150% 상한 적용	150% 상한 적용X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이론

	외부강의등 신고	사례금 상한액(=초과사례금)	
공직자등 의무	신고의무 (사후 10일, 보완 5일)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징계	징계
		500만원 이하 과태료(and)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사후 신고는 외부강의등을 한 날부터 10일 (현행 유지)
보완 신고는 보완할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최근 개정)



외부강의등 사후 신고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2일->5일로 연장되었나요?



사후 신고는 외부강의등을 한 날부터 10일로 개정
(일부라도 신고한 보완 신고가 2일->5일로 개정)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이론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및 신고 - 이론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2020. 5. 27. 시행)

-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대통령령(영 제25조<별표2>) 정한 금액 초과사례금 금지
-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2일 이내에 사후 신고 (**삭제**)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

사례금 여부 불문 신고 -> 사례금 0만 신고
사전 신고 원칙 및 사후 신고 예외 -> 사후 신고 허용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및 신고 - 사례

사례 vs 사례

사례금 없이 외부강의등 요청? 사전 신고 X

(사례금 있는) 국가·지자체, 국·공립학교 요청? 사전 신고 X 사례금 상한 O

(사례금 있는) 국제기구, 외국정부·대학 요청? 사전 신고 O 사례금 상한 X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and 반환



공무원이 목요일에 1시간 강의하고 같은 날 5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 and 반환(10만원)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사례

사후 신고는 외부강의등을 한 날부터 2일 (현행 유지)
보완 신고는 보완할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최근 개정)



외부강의등 사후 신고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2일->5일로 연장되었나요?



사후 신고는 개정되지 않음(=외부강의등을 한 날부터 2일)
(일부라도 신고한 보완 신고가 2일->5일로 개정)

제10조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 이론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 7073,
7078
(F) 044-200-7911

2018. 7. 5.(목) 총 5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작성	민원신고심사과		
	과장	김형국	☎
	02-6021-2150		
	사무관	최순임	☎
	02-6021-2160		

‘공직자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도 국민은 부패행위로 인식해

국민권익위, 최근 부패신고 중 종결·송부한 3,200여건 분석

- 법률상 부패행위가 아닌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처리·근무태만·불친절에 대해 국민들이 이를 부패로 신고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Q & A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hyoson.kim@bok.or.kr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